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2,259,395	14,467,782
일반회계	444,031,746	13,320,952
특별회계	38,227,649	1,146,829
공기업특별회계	35,674,304	1,070,22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1,578,771	647,36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4,095,533	422,866
기타특별회계	2,553,345	76,600
지하수특별회계	258,955	7,769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216,962	36,509
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	1,077,428	32,32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85,18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○ 인건비

○ 업무추진비

○ 복리후생비